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법적 연구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중심으로 한
공정이용의 재해석과 입법적 개선 방안—

A Copyright Law Study on the Production of For-Profit Educational Content Using Generative AI —Reinterpreting Fair Use Through the Lens of Transformative Use and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박 선 애*

Park, Sun Ae

정 연 덕**

Chung, Yeun-Dek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생성형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여부 재해석 |
| II. 생성형 AI와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 제작의 현황 | V. 저작권법의 입법적 개선 방안 |
| III.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변형적 이용의 이론적 고찰 | VI. 맺는 글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교육 산업의 콘텐츠 제작 방식도 근본적인

<https://doi.org/10.35148/ilsilr.2026..64.31>

투고일: 2026. 6. 30. / 심사완료일: 2026. 7. 22. / 게재확정일: 2026. 7. 27.

* 제1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대교 콘텐츠기획팀 팀원

First author: Doctoral program completer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 Staff,
Content Planning Team, Daekyo Co., Ltd.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 기업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강의 자료와 문제은행, 학습 보조자료 등을 교육 콘텐츠로 제공할 경우, 데이터 복제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 저작권법과의 충돌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조항은 ‘학습데이터의 수집’과 ‘콘텐츠 생성’이라는, 생성형 AI 특유의 이중 구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미국 저작권법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법리가 생성형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특히 영리적 이용과 변형적 이용의 관계를 재정립한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이하 ‘Andy Warhol 판결’이라 함.)에 주목하여,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를 입력 단계(학습 데이터)와 출력 단계(콘텐츠 생성)로 나누어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의 TDM 면책 규정,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정보해석을 위한 이용) 예외 조항, 그리고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비교·분석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에 있어 저작권법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은 입력 단계와 출력 단계를 구분하여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Andy Warhol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 목적이 원저작물과 사실상 유사한 영리적 목적의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는 변형적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진다. 셋째,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같은 일반조항만으로는 생성형 AI 시대의 다변화된 이용 양상을 모두 포섭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① 교육 콘텐츠에 특화된 구속력 있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② EU와 일본 입법례를 참고한 독립적 TDM 면책 규정(제35조의6)의 신설, ③ 보상금 제도 또는 확대집중관리(ECL)의 도입을 제안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 저작권, 공정이용, 변형적 이용,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Andy Warhol 판결, ECL

I. 들어가는 글

2022년 11월 OpenAI가 ChatGPT를 대중에게 공개한 이래, 모든 분야에는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들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개인화하여 가이드하는 수준을 넘어, 강의 스크립트와 평가 문항 퀴즈, 맞춤형 학습 보조 교재 등 상업용 교육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드는 고도화된 사용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단 닷새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끌어 모으고 두 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소비자 서비스 역사상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을 기록한 ChatGPT의 파급력은 이제 교육 업계의 생존

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¹⁾ 특히 교육 업계의 현장에는 이미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깊숙이 들어왔다. 이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기반 문제 자동 출제 시스템, 오답 분석,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경로 추천 같은 기능 등을 경쟁적으로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²⁾

생성형 AI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선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기존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활용되는 문제, 즉 입력 단계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시장을 대체하는 문제, 곧 출력 단계의 시장 대체 가능성도 있다. 두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성격이 달라, 이후 논의할 공정이용과 접목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을 요구한다.

공정이용의 법리는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시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을 억제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 등으로 정의된다.³⁾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비준된 2011년의 개정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조항이다.⁴⁾ 문제는 이 조항이 생성형 AI라는 환경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생성된 콘텐츠에 변형적 성격이 있는지, 그것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실제로 대체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못한다. 이 불확실성은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과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만든다.

여기에 2023년 *Andy Warhol* 판결은 변형적 이용 법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표현을 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형적 이용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 원저작물과 사실상 같다면, 특히 그 이용이 영리적이라면 공정이용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 논리를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에 대입하면,

1) Euro news, Krystal Hu,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2023. 2. 2, <<https://www.euronews.com/next/2023/02/02/openai-chatgpt>>, 검색일: 2026. 5. 10.

2) 한국경제, 박미옥, “웅진씽크빅 창립 45년... ‘에듀테크 시대’ 고객과 함께 연다”, 2025. 8. 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377081>>, 검색일: 2026. 5. 10.

3) *Stewart v. Abend*, 495 U.S. 207 (1990).

4) 류시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대법원2024. 7. 11. 선고2021다272001 판결 평석-”, 법조 제73권 제5호, 법조협회, 2024, 394쪽.

5)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같은 교육 시장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AI 생성 콘텐츠의 공정이용 항변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변형적 이용 법리를 축으로 생성형 AI 기반 영리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법리를 다시 읽고, 현행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과 교육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함께 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기술적 범위는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생성에 쓰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한정한다. AI 알고리즘 자체의 기술적 작동 원리보다는,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는 단계와 결과물이 출력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데 무게를 두며 현재 학계에서도 학습 단계와 생성 단계를 나누어 각각의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⁶⁾

주체와 목적의 측면에서는 사교육 기관, 에듀테크 기업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주체의 콘텐츠 제작만을 다룬다.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 법정 보상금 제도는 비영리 교육기관에 한정된 혜택으로, 영리 에듀테크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 대상으로 삼는 콘텐츠는 초·중·고 교육과 어학·자격증 시장에서 유통되는 교재(요약본·문제집), 온라인 강의용 시각 자료, 평가 문항 등 영리 목적의 교육 콘텐츠다. 교육 콘텐츠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강의 스크립트, 교재 요약, 문제은행), ② 시각 자료(인포그래픽, 삽화, 개념도), ③ 복합 콘텐츠(AI

6) Matthew Sag, "Copyright Safety for Generative AI", *Houston Law Review Vol. 61*,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2023, p. 295.

기반 개인화 학습 자료, 대화형 튜터링 시나리오) 등이 있다. 또한, AI 생성물 자체의 저작물성이나 AI의 창작자 지위 문제는 그 자체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시행된 201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를 다루되, 2023년 *Andy Warhol* 판결과 2026년 2월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등 최근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다. 공간적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에 두고, 비교를 위해 미국·EU·일본의 법제를 함께 검토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한다. 다만 국가마다 법체계와 사법 문화가 상이한 만큼, 외국의 판례나 입법을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법적 검토는 외국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석론과 입법론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첫째, 국내외 학술 논문과 저작권법 도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책 보고서를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제35조의5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먼저 분석한 뒤, 그 토대 위에서 생성형 AI 맥락의 해석론을 펼친다.

둘째,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연방법원 판례를 따라가며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공정이용 판단의 중심에 있어 온 변형적 이용 법리가 *Campbell* 판결 등을 거치며 어떻게 형성·발전했는지 살피고, 구글 북스 사건처럼 디지털 복제를 다룬 선례에서 기술적 변형의 법리를 끌어낸다.⁷⁾

셋째,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으로 최신 판례를 분석한다. 2023년 *Andy Warhol* 판결⁸⁾의 변형적 이용 법리에 대한 최근 제한 경향이 AI 환경에 던지는 함의를 끌어내고, 2026년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인 *New York Times v. Open AI* 와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흐름을 추적해 우리 법 해석에 비추어 본다.⁹⁾

7)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8)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9) *The New York Times Co. v. Microsoft Corp.*, No. 1:23-cv-11195 (S.D.N.Y. filed Dec. 27, 2023); *Getty*

끝으로 정책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 EU의 DSM 지침상 TDM 면책 규정(제3조·제4조)과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의 정보해석 예외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교육 AI 콘텐츠 상생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과 법정 보상금 모델을 설계하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 간다.

II. 생성형 AI와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 제작의 현황

1. 생성형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양상

1.1 생성형 AI의 교육 콘텐츠 적용 유형

생성형 AI는 자연어로 작성한 사용자 명령을 AI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프로그래밍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무엇을 생성하느냐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음악, 영상, PPT, 프로그래밍 코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¹⁰⁾ 이러한 기술을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육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유형으로, 생성형 AI가 학습 자료와 강의 스크립트, 문제은행, 요약문 등을 직접 생성한다.¹¹⁾ 둘째, 개인별 학습을 돕는 유형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및 교육 콘텐츠를 제시한다.¹²⁾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 AI 튜터링으로, 대화형 AI가 교사 역할의 일부를 맡아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고 피드백을 준다.¹³⁾ 이러한 유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Ltd., No. 1:23-cv-00135 (D. Del. 2023).

10) 민준홍/김미량,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에 관한 질적 연구-학교 현장의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8권 제8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5, 26쪽.

11) 홍선주/권점례/김광규/박용호/이재봉/박연정,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 21쪽.

12) 김세영, “TF-IDF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AI 기반 개별화 학습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7권 제4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23, 454-455쪽; 권혜성/김민지, “생성형 AI 챗봇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대규모 온라인 수업 설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5, 1771쪽.

갖는다.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데이터 의존에 따른 편향성은 데이터의 수집 단계부터 시작된다.¹⁴⁾

여기서 문제는 생성형 AI가 학습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¹⁵⁾ 다만,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물의 복제 및 분석은 기존 저작권 체계에서 그 법적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며, 바로 이 모호함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2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 사업의 확장과 법적 공백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 역시 2021년 기준 약 7조 3,000억 원 규모이던 국내 시장이 연평균 8.5%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¹⁶⁾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 영역을 한층 더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학습 콘텐츠를 자동 생성·평가하거나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항을 생성하며, 나아가 해외 AI모델이 한국어의 맥락과 고유한 교육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교육 전용 자체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¹⁷⁾

주목할 부분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단순한 공개 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고서 및 문제집과 같은 교육 저작물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에듀테크 기업들과 저작물의 권리자와의 충돌이 산업적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창작물과 충돌한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터 이용 대가의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13) 채주혜/김민영/류강/유영만/신윤희,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 챗봇 기반 플랫폼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4, 1059쪽.

14) 민준홍/김미량, 앞의 논문, 26쪽.

15) 최숙영, “생성형 AI시대의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7권 제9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4, 25쪽.

16) 관계부처 합동, 에듀테크 진흥방안,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2023.

17) 텍스트넷 블로그, “LLM 시대를 맞이하는 에듀테크(교육)시장의 AI 도입 전략”, 2024. 6. 3, <<https://article.textnet.kr/ai-adoption-strategy-in-edutech>>, 검색일: 2026. 5. 10.

권리 분배 체계 구축, 그리고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한 바 있다.¹⁸⁾

2.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의 법적·산업적 특성

2.1 교육 콘텐츠의 이중적 성격

교육 콘텐츠에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일정한 제한(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예외의 이용)을 두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기관 및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¹⁹⁾

그러나 제25조가 정하는 이용 주체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이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25조 제6항에 따른 이용도 무상의 전면적 면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제한적 허용이다. 따라서 영리 에듀테크 기업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콘텐츠 생성이 적법한지는 제25조와 같은 개별 제한규정이 아니라, 결국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2.2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법적 특수성

생성형 AI가 만든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지위는 현행법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설이다.²⁰⁾

18) 백지연,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제24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4쪽.

19) 김경숙, “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92쪽.

반면에 인간이 프롬프트 설계 등으로 산출한 결과물을 수정·증감하고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에 한정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²¹⁾

그러나 더 본질적인 쟁점은 AI 학습·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저작자에 대한 침해 문제이다. 학계에서도 AI 학습 단계의 무단 복제와 더불어,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생성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생성·이용 단계에서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²²⁾

특히 수험 문제처럼 표현 그 자체가 핵심 가치인 교육 저작물의 경우, AI가 학습 후 유사한 문제를 생성하는 행위를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III.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변형적 이용의 이론적 고찰

1.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의 의의와 한계

1.1 공정이용 조항의 입법 배경과 구조

공정이용은 영국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²³⁾ 2011년 한·미 FTA 이행 개정으로 도입된 제35

20)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83쪽; 김경숙,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IT와 법연구 제27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3, 35쪽; 정세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83쪽.

21) 김중진/장항배,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개선 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 48쪽.

22) 김경숙,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계간 저작권 제38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19쪽; 권순재,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8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4, 30쪽.

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용의 목적과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제3호), 그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을 판단 요소로 든다.

이 조항은 열거된 목적 밖의 이용까지 끌어안는 포괄적 일반조항이며, 4개의 요소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형량된다. 법원은 어느 한 요소가 충족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구조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35조의5 제1항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 WIPO 저작권조약(WCT)이 정하는 3단계 테스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제2항에서 나열한 4개의 요소는 미국법의 공정이용 조항(제107조)에서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로 규정한 4가지와 같기 때문이다.²⁴⁾ 즉 제35조의5는 대륙법계의 3단계 테스트와 영미법계의 4요소 심사를 하나의 조문 안에 함께 규정한 혼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제107조와 구별된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생성형 AI의 공정이용 판단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유럽에서 TDM 예외 논의 시 3단계 테스트, 권리자의 opt-out(권리유보), 복제물의 보관 기간 및 이용 목적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다뤄지고 있는 것²⁵⁾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도 4요소 심사와 별개로 “통상적 이용 방법과의 충돌 여부” 및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라는 3단계 테스트적 요건이 생성형 AI 학습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3) 최승재/김시열, 저작권법 제1판, 법문사, 2024, 303쪽.

24) 문건영,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2쪽.

25)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AI and copyright: The training of general-purpose AI”, 2025, p. 2 :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ATA\(2025\)769585](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ATA(2025)769585)>, 검색일: 2026. 5. 10; Martin Senfiteben, “Are the European TDM Exceptions Applicable to GenAI Training? Despite the Three-Step Test?”, 2025. 10. 1,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are-the-european-tdm-exceptions-applicable-to-genai-training-despite-the-three-step-test/>>, 검색일: 2026. 5. 10; Joris Deene, “When does AI training violate the three-step test in copyright law?”, 2025. 9. 13, <<https://www.ictrechtswijze.be/en/when-does-ai-training-violate-the-three-step-test-in-copyright-law/>>, 검색일: 2026. 5. 10.

1.2 4요소 각론

제1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은, 해당 이용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적·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 성격을 가지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²⁶⁾ 뒤에서 살필 변형적 이용 법리와 직결되는 만큼,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는, 창작성이 높고 미공표된 저작물일수록 권리자 보호 쪽으로 기운다.²⁷⁾ 수험서·문제집 같은 교육 저작물은 사실적 정보와 창작적 표현이 뒤섞인 혼합적 성격이어서 이 요소만으로는 권리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문제의 선별·배열·구성에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6조),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와 대체 가능성은 제4요소에서 더 실질적으로 보호된다.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은 저작물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과 질적 상당성을 모두 고려한다.²⁸⁾ 일반적으로 사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소량의 이용이라도 해당 부분이 저작물의 본질적 가치나 창작적 핵심을 차지한다면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²⁹⁾ 특히 AI 학습에서는 원저작물 전체가 데이터로 처리되고 핵심 부분이 집중적으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요소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1요소와 더불어 공정이용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려요소이다. 제4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 이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시장 영향은 현실의 시장 대체뿐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포함하며,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 분석에서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그러나 제4요소 역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는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요소들과의

26) 김민주/김현경, “AI 학습에서 “변형적 이용”과 “잠재적 시장”의 의미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제3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5, 301쪽.

27)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564(1985).

28) 류시원, “뉴스와 공정이용”,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 한국사법학회, 2026, 182쪽.

29) 김민주/김현경, 앞의 논문, 304쪽.

30) 류시원, 앞의 논문, 410쪽.

종합적인 관계에서 공정이용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³¹⁾

1.3 생성형 AI 맥락에서의 구조적 한계

공정이용 4요소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활성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 이용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의 개념이다.³²⁾

그러나 제35조의5는 생성형 AI 앞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이 조항은 “인간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AI의 학습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내에는 판결이 전혀 없고 해외에도 이를 정면으로 다룬 확정판결이 없다. 또한 AI의 데이터 학습은 복제·배포·공연 같은 전통적 이용과 기술적으로 달라 제1요소의 적용이 까다롭다. 끝으로 AI가 학습한 수백만 건의 저작물 하나하나에 공정이용 판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여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했다.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³³⁾ 다만 안내서 스스로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1.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조항은 개별적 권리제한 규정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용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유연성은 동시에 한계의 원천이기도 하다. 공정이용

31) 송재섭,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1쪽.

32)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2023, 243쪽.

3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 15쪽.

법리는 본래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사후적·개별적 형량 구조이고, 4요소 역시 인간이 특정 저작물을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방대한 저작물을 일괄·대량으로 학습하고(입력) 그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산출하는(출력) 생성형 AI의 이용 양상 앞에서 구조적 부정합을 드러낸다. 변형성 판단은 학습 단계와 생성 단계에서 달라지고, 이용 분량 기준은 전부 복제가 일반적인 학습의 특성상 변별력을 잃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이 커지는 한편 평가는 한층 어려워진다. 특히 영리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저작물을 학습해 같은 교육 시장에서 경쟁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Andy Warhol 판례의 기조에 비추어 변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이용 항변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다.

결국 현행 공정이용 조항은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가늠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권리자와 AI 사업자 모두를 개별 소송을 통한 사후적 분쟁 해결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는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 어느 쪽에도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론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공백이다. 따라서 변형적 이용 법리의 재검토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규정이나 권리자 보상 체계와 같은 입법적 보완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미국 저작권법상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법리의 전개

2.1 변형적 이용 법리의 역사적 배경

저작권법의 역사는 기술 변화에 맞춰 권리 보호의 범위를 끊임없이 다시 그려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제도의 바탕에 깔린 실용주의적 시각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창작의 유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중의 합리적 이용을 열어 두어 문화와 지식의 진보를 도모하는 균형점을 지향한다. 이러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이며,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이라고 명시³⁴⁾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이 창작자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헌법적

34)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U.S. Const. art. I, § 8, cl. 8).

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핵심 장치가 공정이용 법리이며, 그 중에서도 변형적 이용은 현대 저작권법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2.2 변형적 이용 개념의 기원: Leval 판사의 이론적 정초

변형적 이용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출발점은 1990년 연방판사이자 법학자인 Pierre N. Leval이 *Harvard Law Review*에 실은 논평(Commentaries)에서 확인된다. Leval은 공정이용을 판단할 네 가지 요건이 명문으로 있는데도 판례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이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문자적 차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차용한 자료를 새로운 정보·미학·통찰·이해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2차적 이용이 원저작물에 가치를 더한다면, 즉 인용된 자료가 새로운 정보와 미학, 통찰을 빚어내는 과정에서 원료로 쓰여 변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이용 법리가 사회적 풍요를 위해 보호하려는 활동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2.3 Campbell 판결에 의한 법리의 확립

Leval의 이론은 1994년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³⁶⁾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예시한 논평·비판·뉴스보도·교육·학문·연구 등도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상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용이 상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부정으로 추정한다면 그 예시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하며, 이용이 상업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정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³⁷⁾

특히 이 판결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을 조명하고 새로운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분명한 변형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창작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했다. 또한 제1요소를 평가할 때 새로운 작품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35)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ard Law Review Vol. 103*, The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0, p. 1111.

36)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37) *Campbell*, 510 U.S. at 584.

대체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표현·의미·메시지를 더하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⁸⁾

2.4 기술적 혁신으로의 확장: Google Books 판결

Campbell 이후 변형적 이용 법리는 단순한 예술적 재해석을 넘어 기술 혁신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확장해 나아갔다. 대표적으로 2015년 *Authors Guild v. Google* 판결에서 법원은, 수백만 권의 도서를 스캔해 검색 엔진을 구축한 행위가 원본 판매를 대체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고도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구글이 복제한 자료의 이용이 원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것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변형적이며, 검색·색인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원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미리보기 기능인 스니펫(Snippet)³⁹⁾표시가 오히려 원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정이용 판단의 제4요소(시장 영향)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다.⁴⁰⁾

이 시기 법원의 판결들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더라도 이용 목적이 기능적이고 원본 시장을 대체하지 않으면 변형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것도 통계적 패턴 추출이라는 새로운 목적의 기술적 과정이므로 변형적”이라고 주장하는 법리적 발판이 되었다.⁴¹⁾

실제로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법원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복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Google Books의 기능적 변형성 법리를 주요 근거로 끌어왔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비판이 잇따른다. 작가조합(Authors Guild)은 Bartz가 변형성을 먼저 인정한 뒤 나머지 요소들을 자동으로 유리하게 형량해서는 안 된다는 Andy Warhol의 법리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Alliance는 생성형 AI의 대규모 기계적 복제를 인간의 학습에 빗댄 것이 잘못된 유추이며, Warhol이 요구한 “복제의 합리적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38) Campbell, 510 U.S. at 579.

39) 미리보기로 짧게 요약해 보여주는 2-3줄짜리 문장을 의미함.

40)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41)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9th Cir. 2007).

비판했다. 실제로 이를 뒤 선고된 같은 법원의 *Kadrey v. Meta* 판결에서도 담당 판사는 AI 학습과 인간 학습의 유추를 “부적절(inapt)”하며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시장 희석의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제4요소가 배심원에게 갔을 것이라고 밝혀, Bartz가 변형성 판단에 매몰되어 제4요소를 가볍게 다뤘음을 예들려 꼬집었다.⁴²⁾

2.5 변형적 이용 법리의 확장 and 비판

Campbell 이후 하급심은 변형적 이용의 범위를 점점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제2연방항소법원의 *Cariou v. Prince* 판결은, 사진작가 카리우의 흑백사진 30점에 예술가 리처드 프린스가 상당 부분 원형 그대로 쓰면서도 색채·요소를 더해 예술적 콜라주로 재구성한 행위를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변형성 판단이 지나치게 이용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다.⁴³⁾

이렇게 약 30년 동안 변형적 이용 법리는 예술적 패러디에서 디지털 기술과 생성형 AI 학습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그 확장에 제동을 건 것이 2023년 Andy Warhol 판결이다. Campbell(1994) → Cariou(2013) → Google Books(2015) → Andy Warhol(2023)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각 판결이 앞선 판례의 해석 범위를 수정·재정립하며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법리가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생성형 AI 시대의 공정이용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3. 영리 목적 이용과 변형적 이용의 긴장 관계: Andy Warhol 판결의 시사점

3.1 사건의 경과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이하 ‘Andy Warhol’이라 함)은, 앤디 워홀 재단이 2016년 가수 프린스(Prince)의 사망 이후 콩테나스트의 추도 특별호 표지

42)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 WHA (N.D. Cal. 2025); Authors Guild, “Mixed Decision in Anthropic AI Case”, 2025. 6. 25, <<https://authorsguild.org/news/mixed-decision-in-anthropic-ai-case/>>, 검색일: 2026. 5. 10; Copyright Alliance, “Analysis in Bartz v. Anthropic AI Case Marred by Fatal Flaws”, 2025. 7. 24, <<https://copyrightalliance.org/bartz-anthropic-ai-case-flaws/>>, 검색일: 2026. 5. 10; *Kaderey v. Meta Platforms, Inc.*, No.23-cv-03417-VC, Dkt.No.587 (N.D.Cal.2025).

43)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용으로 「오렌지 프린스」의 라이선스를 허용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작품은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이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의 프린스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실크스크린 연작 중 하나이다.

3.2 판결의 핵심 법리

소토마요르(Sotomayor) 대법관이 집필한 7인 다수의견은, 제1요소에서 단지 “새로운 표현을 더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변형적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저작물이 변형적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전환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2차적 저작물이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에 일정한 변형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변형이 곧 변형적 이용’이라는 도식을 배격한 판시이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은, 영리적 이용의 목적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하다면 새로운 표현을 더했더라도 제1요소는 저작권자 측으로 기운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서치(Gorsuch)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만약 비영리 박물관의 전시나 20세기 예술사에 관한 저서에서의 이용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며, 이용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context)’이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3 소수의견의 논거와 그 의의

케이건(Kagan) 대법관이 집필하고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이 동참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Campbell 판결 이래 확립된 변형적 이용 법리를 후퇴시키고 예술적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워홀은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로 재해석함으로써 원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술적 진술(Statement)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서, 워홀의 작품은 충분히 변형적이며, 단순 잡지 표지 사용이라는 맥락의 유사성만으로 변형성을 부정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하였다.⁴⁴⁾

44)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29-530 (2023).

3.4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시사점

Andy Warhol은 생성형 AI 기반 영리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판단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이 법리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교육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문제나 강의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 곧 교육 시장에서의 학습 보조로 쓰인다면, 표현 형식이 달라졌다 해도 변형적 성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더구나 그 이용이 영리적이라면 한층 엄격한 심사가 따른다. 종래 변형적 이용의 범위를 넓혀 온 흐름에 제동을 걸어,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이용 항변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수학 수험서를 학습해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영리 수험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원저작물(수학 시험 준비용 교재)과 생성형 AI 콘텐츠(수학 시험 준비용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동질적이고 그 이용이 상업적이므로,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1요소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기능한다는 점이다.

다만 Andy Warhol이 오직 제1요소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성형 AI 학습에서는 제2요소(학습된 저작물의 성격)나 제3요소(학습에 쓰인 분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공정이용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IV. 생성형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여부 재해석

1. 입력 단계(학습 데이터)와 출력 단계(콘텐츠 생성)의 이분법적 접근

1.1 이분법적 접근의 필요성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AI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처리되는 입력 단계(Input)이며, 둘째는 학습을 마친 모델이 이용자의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출력 단계(Output)이다.

이러한 두 단계는 기술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성격이 다르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입력 단계에서 AI모델은 수백만 건 단위의 저작물을 통계적 패턴으로

분해·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저작물이 그 표현 그대로 모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특징(latent feature)으로 흡수된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훈련 데이터와 모델 출력물 사이의 연결(attenuated link)”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습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 use)에 해당되어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유리한 반면, 생성되는 개별 출력물은 특정 프롬프트에 대응해 구체적 표현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⁴⁵⁾

다음으로 법리적 성격으로 보면 서로 다른 저작권법 쟁점과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입력 단계에서는 ①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법리, ②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가 실제로 모델에 암기(memorization)되었는지 여부, ③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반면 출력 단계에서는 ① 산출물과 원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② 산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보고서에서 이 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⁴⁶⁾ 디지털 저작권법 분야의 권위자인 Samuelson 역시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저작권 쟁점을 학습 단계의 문제와 산출물 단계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⁷⁾

따라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두 단계를 하나로 결합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고유한 법리를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1.2 입력 단계의 공정이용 분석

입력 단계, 즉 학습 데이터 처리의 공정이용 여부에는 전통적인 TDM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Authors Guild v. Google* 판결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대량 텍스트 복제를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⁴⁸⁾ 그러나 영리 목적을 위한 생성형 AI 학습에는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Andy Warhol 이후의 법리 아래에서는, 변형성 판단의 핵심이 상업성 그 자체가 아니라

45) Matthew Sag, *Ibid.*, p. 313.

46)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2025, p. 31.

47) Pamela Samuelson, “Generative AI Meets Copyright”, *Science Vol. 381 Iss. 665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23, pp. 158-161.

48)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이용 목적이 원저작물의 본래 목적과 동일한지 여부로 이동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Google Books 사건에서 구글 역시 영리기업이었지만, 그 목적(검색·색인 제공)이 원저작물의 목적(독서를 통한 정보 및 감상 제공)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영리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콘텐츠 생성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같은 종류의 교육 저작물을 학습에 쓰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제1요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나 기술 개발 목적의 생성형 AI 학습은, 원저작물의 본래 목적(교육 콘텐츠 제공)과 이용 목적(언어 패턴 분석, 기술 연구)이 다르고 영리성이 없거나 낮으므로, 같은 교육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영리 학습보다 변형적 이용을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 이는 EU DSM(EU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 지침이 비상업적 연구 목적 TDM(제3조)과 상업적 TDM(제4조)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면책요건을 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1.3 출력 단계의 공정이용 분석

출력 단계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와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시장 대체성이 주된 쟁점이 된다. 생성형 AI가 교육 저작물을 학습해 비슷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하는 행위일 수 있다.⁴⁹⁾ 게다가 그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유통되어 원저작물의 판매를 대체한다면 시장 영향 요소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⁵⁰⁾

다만 출력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컨대 생성형 AI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어 내는 경우에는 출력물이 원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을 재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생성형 AI가 같은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되 전혀 다른 문제와 설명 방식으로 이를 표현했다면,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상 두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때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전에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49) U.S. Copyright Office, *op. cit.*, p. 31.

50) *Ibid.*, p. 61.

2. 교육 목적성(영리성)과 변형적 이용 가치의 충돌 분석

2.1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태도를 취해 왔다. 저작권법 제25조가 일정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면책은 비영리 교육기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영리 에듀테크 기업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문제는 영리 에듀테크 기업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일부 띠는 데 있다. 이런 공익적 요소를 공정이용 판단에서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Andy Warhol의 논리를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이라도 상업적 성격이 뚜렷한 이용에는 변형적 이용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⁵¹⁾

2.2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변형성 판단 기준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변형성은 콘텐츠가 지닌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Andy Warhol의 논리에서 변형성의 핵심은 “이용 목적”의 차별성이다. 만약 원저작물과 생성형 AI 콘텐츠가 동일한 교육 시장에서 같은 목적으로 소비된다면,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목적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변형적 이용이 성립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존 수학 교재의 연립방정식 단원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난이도가 유사한 문제를 숫자만 바꾸어 동일한 수험 준비용으로 판매한다면, 목적의 동질성은 명백하다. 반대로 같은 수학 개념을 차용하되 전혀 다른 실생활 맥락의 응용 문제를 만든다면 일정한 변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Andy Warhol이 어디까지나 공정이용의 제1요소에 관한 판단인 만큼, 목적의 동질성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세 요소의 종합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생성형 AI가 같은 개념(아이디어)을 쓰되

51) Michael W. Carroll, “The Struggle for Music Copyright”, *Florida Law Review* Vol. 57, Fredric G. Levin College of Law, 2025, p. 907.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공정이용 단계에 이르기 전에 침해 여부가 먼저 부정된다는 점이다.⁵²⁾

한편 생성형 AI가 게임화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처럼 기존 교재와 전혀 다른 학습 방법론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한다면, 같은 교육 시장에서 쓰이더라도 이용 목적과 성격의 차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목적의 실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 더해졌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Andy Warhol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이미지 검색 엔진이 사진을 썸네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이 원본 사진의 예술적 목적과 다른 기능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형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유추하면 생성형 AI가 전혀 다른 교육적 맥락과 방법론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경우 변형성이 인정될 수 있다.⁵³⁾

3. 시장 대체성(Market Substitution) 유무의 판단 기준

3.1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의 부상

제4요소인 시장 영향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라는 새로운 잠재적 시장의 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 대 OpenAI·마이크로소프트 사건(동 사건은 2024년 9월 데일리뉴스 등 다른 언론사 소송들과 통합되어 현재 16개 저작권 소송이 단일로 진행 중이다.)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은 생성형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단 학습이 이 시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⁵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주요 교육 출판사들이 생성형 AI 학습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이 실재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 대한 무단 이용은 시장 대체성 요소에

52)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350 (1991).

53)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54) *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et al.*, 1:23-cv-11195 (S.D.N.Y. filed Dec. 27, 2023); Bloomberg Law, “OpenAI Must Turn Over 20 Million ChatGPT Logs, Judge Affirms”,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openai-must-turn-over-20-million-chatgpt-logs-judge-affirms>>, 검색일: 2026. 5. 20.

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된다. 실제로 AP통신, 악셀 스프링어 등 일부 언론사는 Open AI 등과 생성형 AI 학습 및 콘텐츠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⁵⁵⁾

3.2 이분법적 접근에 따른 단계별 시장 대체성 분석

입력 단계의 시장 대체성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 저작권자가 학습용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뜻을 밝혔는데도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력 단계에서는 생성형 AI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수요자를 실제로 흡수하는지를 본다. 같은 수험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성형 AI 콘텐츠는 원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대체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특히 저작권자가 robots.txt 등으로 생성형 AI 학습용 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이는 opt-out 의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무시한 크롤링은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EU DSM 지침 제4조 제3항도 이런 기계 판독 가능한 opt-out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생성형 AI 콘텐츠의 대량 생산이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시장 영향 판단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생성형AI 콘텐츠가 시장 전체를 키우는 경우와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V. 저작권법의 입법적 개선 방안

1. 생성형 AI 활용 교육 콘텐츠를 위한 공정이용 기준의 마련

1.1 현행 안내서의 한계와 교육 분야 특화의 필요성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공정이용 안내서는 AI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청의 해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그 지위가 참고자료에 그쳐 구속력이 없는 비규범적

55) OpenAI, “Partnership with Axel Springer to deepen beneficial use of AI in journalism”, 2023. 12. 13, <<https://openai.com/index/axel-springer-partnership/>>, 검색일: 2026. 5. 20.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실무상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교육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구체적 기준을 내놓지 못해, 에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 특화된 공정이용 기준의 마련을 제안한다. 이는 교육 콘텐츠 시장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비영리 특례 적용 영역’과 ‘영리 일반공정이용 영역’으로 이미 법적 지위가 이분화 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교육 목적이라도 영리 에듀테크 기업은 제25조의 혜택 없이 제35조의5에만 의존해야 함에도 정작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원적 시장구조는 도서관(제31조), 장애인(제33조·제33조의2) 등 이용주체 및 목적별로 세분화된 특례를 두고 있는 우리 저작권에서 이미 확립된 입법기법이라는 점⁵⁶⁾에서, 교육 분야에 관하여도 세분화된 기준을 두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교육 분야에서만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유사한 이원적 구조를 가진 다른 분야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1.2 위임입법의 헌법상 요건과 단계적 기준 구체화 방안

다만 위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단순한 안내서 형태를 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위임입법(대통령령·부령)의 형식으로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법형식상 헌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간하는 안내서와 위임입법은 법규범으로서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안내서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권고·조언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즉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자체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반면, 위임입법인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상 법규명령이 성립하려면 상위 법률에 위임할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명시적 수권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위임은 누구든지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⁵⁷⁾

56) 이호신,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393-394쪽(<표 4>, <표 5> 참고).

57) 권태웅/서보국,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275쪽.

따라서 앞서 제시한 교육 분야의 이원적 시장구조에 관한 논증은 입법자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현행법 상태에서 하위법령에 의한 구속력 있는 기준 제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형식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구속력 있는 세부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이용주체의 영리·비영리 여부 및 이용 목적을 고려한 공정이용 판단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명시적 위임 조항이 먼저 신설되어야 한다. 다만 위임의 형식과 관련하여, 생성형 AI 학습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판단에 전문적·기술적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보다 개정이 유연한 고시 형식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구속적 안내서의 형태를 유지하되 교육 분야의 이원적 구조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실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과도기적 대안이 될 것이다.

1.3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데이터의 출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에듀테크 기업이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 목록을 저작권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비상업적 학술 연구 목적의 AI 학습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추정하되, 영리 목적 이용에는 저작권법상의 4요소 종합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셋째,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기능적으로 실질 대체하여 저작권자의 잠재적 시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2. TDM 면책 규정의 도입 및 교육적 예외 적용 범위

이른바 학습 데이터 공시 의무는 EU AI Act(Regulation (EU) 2024/1689) 제53조 제1항 (d)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일반 목적 생성형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그 이행을 위한 표준 공시 양식을 발표했는데, 양식은 ①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성격(크롤링·라이선스·합성 데이터의 구분),

②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 ③ 편향 완화 방법, ④ 저작권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한다. 2026년 8월 2일부터는 AI 사무국의 공식 집행이 시작되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중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제101조).⁵⁸⁾

2.1 주요국 TDM 규정의 비교

2.1.1 EU - DSM 지침의 TDM 면책과 최신 판례 동향

EU는 2019년 DSM(디지털 싱글 마켓)저작권 지침 제3조·제4조로 TDM에 관한 명시적 면책을 마련했다. 제3조는 연구기관의 비상업적 과학연구 목적 TDM을 면책하고, 제4조는 상업적 TDM도 허용하되 저작권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opt-out을 선언하면 면책에서 제외한다.⁵⁹⁾

DSM 지침의 TDM 면책이 생성형 AI 학습에도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유럽 법원의 판례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24년 9월 *Kneschke v. LAION* 사건⁶⁰⁾에서 비상업적 생성형 AI 학습에 과학연구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1일 뮌헨 지방법원이 선고한 *GEMA v. OpenAI* 판결⁶¹⁾(GEMA는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로, OpenAI의 ChatGPT가 자사 회원의 작곡가·작사가의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재현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은 유럽에서 생성형 AI 기업이 저작권 침해로 패소한 첫 사례로, TDM 법리에 중요한 제한을 그었다. 뮌헨 법원은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모델 파라미터에 기억(memorization)되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원본과 거의 같게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러한 기억화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TDM 면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⁶²⁾

58) WilmerHale, “European Commission Releases Mandatory Template for Public Disclosure of AI Training Data”, 2025. 8. 13, <<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blogs/wilmerhale-privacy-and-cybersecurity-law/european-commission-releases-mandatory-template-for-public-disclosure-of-ai-training-data>>, 검색일: 2026. 5. 20.

59) DSM Directive Article 4(3).

60) LG Hamburg, Urteil vom 27. 9. 2024 – 310 O 227/23 (*Robert Kneschke v. LAION e.V.*). LAION은 58억 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으로 이뤄진 데이터셋을 무료로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로,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AI 학습 목적의 이미지 다운로드가 DSM 지침 제3조의 과학연구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61) LG München I, Urteil vom 11. 11. 2025 – 42 O 14139/24 (*GEMA v. OpenAI*).

62) EUIPO,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Munich considered memorization and temporary copies occurred in model training as infringing reproductions of works”, 2025. 11. 11, <<https://www.euipo.europa.eu/>>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TDM 면책의 적용 범위를 두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학습 데이터를 수집·변환하거나 분석을 위해 일시 저장하는 단계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만, 저작물이 모델 파라미터에 기억화 되는 단계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OpenAI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러한 구분은 *Kneschke v. LAION* 사건과 *GEMA v. OpenAI* 사건을 비교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AION 사건에서는 연구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분석한 행위 자체가 주된 쟁점이었고,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독일 저작권법상 과학적 연구 목적의 TDM 예외 적용을 인정하였다. 이후 항소심인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도 LAION의 데이터셋 구축 행위를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³⁾ 반면 *GEMA v. OpenAI* 사건에서는 단순한 학습용 데이터 수집 여부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가사가 AI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ChatGPT의 산출물에서 해당 가사가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복제·제공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뮌헨 지방법원은 문제된 가사가 산출물에서 재현된 점을 문제점으로 판단하였다.⁶⁴⁾

종합하면 유럽 법원들은 TDM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라이선스 없는 저작물 활용에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분적 해석은 앞에서 제시한 입력 및 출력 단계의 구분론과도 뜻을 같이 한다. 다만 뮌헨 법원은 입력 단계 안에서도 단순 수집·변환과 기억화를 재차 구분한다는 점에서 더 세분화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⁶⁵⁾

아울러 헝가리 법원이 2025년 4월 EU 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한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 사건(Case C-250/25)은 TDM 면책의 생성형 AI 학습 적용 여부를 다루는 CJEU 최초의 선결적 판결 사례이다. CJEU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은 EU 조약 제267조에 따라 회원국 법원이 EU법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CJEU에

en/law/recent-case-law/the-higher-regional-court-of-munich-considered-memorization-and-temporary-copies-occurred-in-model-training-as-infringing-reproductions-of-works>, 검색일: 2026. 5. 20.

63) OLG Hamburg, Urteil vom 10. 12. 2025 – 5 U 104/24 = GRUR-RS 2025, 33887 (*Robert Kneschke v. LAION e.V.*).

64) Tim W. Dornis/Jane C. Ginsburg/Nicola Lucchi, “GEMA v. OpenAI (Munich I Regional Court, 2025): Doctrinal,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pyright and Generative AI”, *JuristenZeitung Jahrgang. 81 Heft. 6*, Mohr Siebeck Verlag, 2026, pp. 238-239.

65) Norton Rose Fulbright, “[Inside Tech Law] Germany delivers landmark copyright ruling against OpenAI: What it means for AI and IP”, 2025. 11. 17, <<https://www.insidetechlaw.com/blog/2025/11/germany-delivers-landmark-copyright-ruling-against-openai-what-it-means-for-ai-and-ip>>, 검색일: 2026. 5. 20.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그 결과는 모든 회원국 법원을 구속한다. 2026년 현재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2027년경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므로 앞으로의 TDM 법리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⁶⁶⁾

2.1.2 일본 - 정보해석 예외와 최근 입법 논의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제30조의4(정보해석을 위한 이용)를 신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⁶⁷⁾ 이 조항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정보해석(데이터분석)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되 ① 그 이용이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의 ‘향유(享受)’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②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⁶⁸⁾ 또한 문화청은 2024년 발표한 「일본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려방식(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에서, 특정 창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의도적으로 과학습(overfitting)시키는 경우나 침해물임을 알면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등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포괄적 면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⁶⁹⁾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이 광범위한 면책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일본은 2025년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AI 추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⁷⁰⁾ 이에 자민당의 ‘AI·Web3 프로젝트팀’은 정부에 대해,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나 시정 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업자 및 침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운영자를 겨냥한 집행상의 벌칙 도입을 권고하였다.⁷¹⁾ 즉 일본에서도 포괄적 면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출력 단계의 통제 및 집행 수단을 보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AI 저작권 강화 논의는 한국의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66) Hannes Snellman, “Text and Data Mining for AI Training”, 2026. 1. 27, <<https://www.hannessnellman.com/news-and-views/blog/text-and-data-mining-for-ai-training/>>, 검색일: 2026. 5. 20.

67) 차상욱,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규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2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25쪽.

68) 차상욱, 위의 논문, 26쪽.

69) 文化庁(일본 문화청), 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 – Overview, 2024, p. 8.

70)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2025. 6. 4. 시행)”,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55489&AST_SEQ=157>, 검색일: 2026. 5. 20.

71)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日자민, AI법 벌칙 검토...딥페이크·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2026. 4. 2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3010007416>>, 검색일: 2026. 5. 20.

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의 해석은 앞으로 일본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1.3 미국 - 공정이용 일반조항 의존

미국은 별도의 TDM 면책 규정 없이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 일반 조항에 기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025. 06. 23. 선고된 약식판결(Bartz 판결)은 적법하게 구매한 서적을 디지털화하여 LLM 학습에 사용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림자 도서관(LibGen 등)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본을 중앙 라이브러리로 보유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⁷²⁾

비슷한 시기인 2025년 6월 25일, 같은 법원의 Vince Chhabria 판사는 *Kadrey v. Meta* 사건에서 학습 목적의 복제를 공정이용으로 보면서도, 시장 희석(market dilution)에 관한 입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하여 다소 다른 분석틀을 보였다.⁷³⁾ 다만, Bartz 판결은 1심 약식판결에 그치며 항소심에서 확정된 법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항소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2025. 08에 약 15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법원은 2025. 09. 25.에 이를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하였다.⁷⁴⁾

소송 초기 단계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주장들을 분석한 2024. 09. 12.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판결은 기억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Bartz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학습 과정에서 일부 기억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서도 그 사실 만으로 공정이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생성형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의 침해라는 권리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⁷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계에서는 생성형 AI시대에 맞는 명시적 TDM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⁷⁶⁾

72)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 (N.D. Cal. 2025).

73)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3:23-cv-03417-VC (N.D. Cal. 2025) (Order Granting Meta’s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74) Norton Rose Fulbright, “Bartz v. Anthropic: Settlement reached after landmark summary judgment and class certification”, 2025. 9. 5, <<https://www.insidetechlaw.com/blog/2025/09/bartz-v-anthropic-settlement-reached-after-landmark-summary-judgment-and-class-certification>>, 검색일: 2026. 5. 20.

75) Harris Beach Murtha, “Bartz v. Anthropic: Early Look at Copyright Claims and Generative AI”, 2025. 7. 1, <<https://www.harrisbeachmurtha.com/insights/bartz-v-anthropic-early-look-at-copyright-claims-and-generative-ai/>>, 검색일: 2026. 5. 20.

2.1.4 싱가포르 및 그 밖의 주요국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팅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 CDA)을 위한 이용에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면책을 주는 조항(제243조·제244조)을 도입했다. 제243조는 CDA의 정의를, 제244조는 그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lawful access)하였을 것 등의 요건으로 한다.

영국은 2024년 12월 정부가 권리유보(opt-out)를 조건으로 한 TDM 면책 확대 도입안(Option 3)을 선호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저작권자 단체의 강한 반발로 입법이 보류되었다. 결국 2025년 6월 19일에 제정된 데이터 이용·접근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은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실체 규정 없이, 정부에 영향평가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만을 부과한 채 통과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종전의 opt-out 선호안을 철회하고 당분간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라이선스 시장의 발전과 EU·미국의 판례 동향을 지켜보는 관망적인 입장을 밝혔다.⁷⁷⁾

이상을 종합하면 주요국의 TDM 법제는 ① EU·영국처럼 조건부 면책(opt-out 의무)을 두는 방식, ② 일본·싱가포르처럼 포괄적 면책 방식, ③ 미국처럼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기대는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최근 판례는 모델의 기억화와 생성물의 시장 대체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2 국내 TDM 면책 규정 도입 방안

2.2.1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저작권법적 한계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포괄적 AI 일반법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 법은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① 투명성 확보(생성 콘텐츠 고지, 워터마크,

76) Public Knowledge, “Courts Agree: AI Training Ruled As Fair Use in Bartz v. Anthropic and Kadrey v. Meta”, 2025. 7. 3, <<https://publicknowledge.org/courts-agree-ai-training-ruled-as-fair-use-in-bartz-v-anthropic-and-kadrey-v-meta/>>, 검색일: 2026. 5. 20.

77) Reed Smith, Nick Breen/Henry Birkbeck/Harry Clark/Oliver Hogg, “UK copyright and AI report: the ‘opt-out’ is dead, but what comes next?”, 2026. 3. 26, <<https://www.reedsmith.com/articles/uk-copyright-and-ai-report-the-opt-out-is-dead-but-what-comes-next/>>, 검색일: 2026. 5. 20.

답페이지 고지), ② 안전성 확보, ③ 고영향 AI 사업자의 특별 책무, ④ AI 영향평가, 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부과한다.⁷⁸⁾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 이어서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AI 기술 규제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는 셈이며, 두 법률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12조는 학습용 데이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만, 이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진흥 규정일 뿐이다.⁷⁹⁾ 지원 규정은 그 사업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저작권법상 면책 효과를 주지 않는다. 수권 규정과 면책 규정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지능기본법이 학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판단에 달려 있다.

2.2.2 TDM 면책 규정 신설 방안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TDM 면책을 독립 조항으로 신설 하되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교육 분야에 관한 특별 취급 기준을 담을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제35조의5(공정이용)에 이어 제35조의6(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이용)을 신설하여, ① 비영리 연구 목적 TDM의 전면 허용, ② 영리 목적 TDM의 조건부 허용(opt-out 존중, 출처 표시, 학습 데이터 공시 의무 포함), ③ 교육 목적 TDM에 대한 가중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안하는 TDM 면책은 어디까지나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구축 및 분석을 위한 입력 단계에 한정되는 것이지, 생성형 AI의 산출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뮌헨 지방법원의 *GEMA v. OpenAI* 판결이 보여주듯,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학습된 표현이 모델

78) 법무법인(유) 세종,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2026. 2. 1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검색일: 2026. 5. 20.

79)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2025. 11. 12. 입법예고, 2026. 1. 22. 시행) 제12조 제1항은 ① 학습용데이터 생산·가공 기술개발, ②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③ 법제도 연구 및 표준계약서·표준·가이드 개발, ④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내에 기억화되어 재현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TDM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권리의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즉 제35조의6의 TDM 면책은 입력 단계의 적법성만을 담보할 뿐이며, 산출 단계의 침해 여부는 본고가 1.3절에서 논한 실질적 유사성·시장 대체성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⁸⁰⁾

이러한 입력과 출력 단계의 분리 원칙은 EU 방식(조건부 면책 + opt-out)을 취하고 있는 최근 독일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LAION 사건(2024)에서 데이터세트 구축을 위한 중간적 복제 및 분석 행위에 대해 TDM 예외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입력 단계의 기술적 수집을 비교적 넓게 허용한 바 있으나, GEMA 사건(2025)에서는 저작물이 모델 파라미터 내에 기억되어 산출물에서 재현가능한 경우 TDM 면책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최근 독일 법원은 EU DSM 지침 제4조의 적용 범위를 ‘입력 단계의 단순 데이터 처리’로 한정하고, ‘기억화 및 출력 단계의 재현’은 면책에서 제외하는 엄격한 이분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의 TDM에는 비상업적 목적과 구분하여 더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두 단계를 분리하여 규율해야 한다⁸¹⁾는 본 연구의 입법론적 방향성과 부합한다.

한편, 저작권법 TDM 면책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어져 왔으나 아직 입법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도종환 의원(의안번호 2107440, 저작권법전 부개정안)·이용호 의원(의안번호 2118010)·황보승희 의원(의안번호 2122537)이 각각 TDM 면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 TDM에 한해 면책하는 개정안(김태선 의원 대표 발의) 1건이 발의되었으나 2026년 6월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없다.⁸²⁾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두 법률의 연계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기본법에 “AI 모델 제공자가 저작권법 제35조의6의 TDM 면책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는 본법상 투명성 의무 이행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연계 조항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opt-out의 표준화를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나 저작권법 하위 규정에 robots.txt⁸³⁾ 또는 메타데이터

80) Tim W. Dornis/Jane C. Ginsburg/Nicola Lucchi, *Ibid.*

81) 차상욱, 앞의 논문, 41쪽.

8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https://likms.assembly.go.kr/bill/bi/main/mainPage.do>>, 검색일: 2026. 6. 24.

83) robots.txt는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페이지를 크롤러가 수집해도 되는지를 표시해 두는 텍스트

를 통한 표준 opt-out 방식을 명시하면,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줄 수 있다.

3. 보상금 제도(Levy System) 또는 라이선싱 활성화 방안

3.1 보상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보상금 제도는 권리자 개개인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지 않고 이용을 열어 주는 대신, 이용자가 낸 보상금을 모아 권리자에게 사후 분배하는 구조다. 복사기 등장 이후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76조·제83조(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면 수백만 건의 저작물을 개별 협상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AI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야 하는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럽의 선진적 집중관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960년대 초부터 발전시킨 확대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ECL은 특정 분야에서 다수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이용허락의 효력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권리자(Outsiders)의 저작물에게까지 법률로 확장해 주는 제도이다.⁸⁴⁾

이를 통해 AI 개발자는 수많은 권리자를 일일이 찾아 협상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나아가 ECL은 EU DSM 지침 제8조와 제12조에 수용됨으로써 EU 저작권 법제 내에서 명시적인 입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⁸⁵⁾

ECL과 함께, 독일·오스트리아 등이 발전시킨 보상금(Levy) 제도 역시 학습 데이

파일로, Robots Exclusion Protocol이라는 웹 관행을 따른다. TDM·AI 학습 거부 의사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EU DSM 지침 제4조 제3항의 전형적 예시다.

84) Thomas Riis/Jens Schovsbo, “Extended Collective Licenses and the Nordic Experience -It’s a Hybrid but is it a Volvo or a Lemon?”, *Columbia Journal of Law and the Arts* Vol. 33 Iss. 4, Columbia Law School, 2010, p. 471.

85) Daniel J. Gervais, “The Landscape of Collective Management Schemes”,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 34, Columbia Law School, 2011, pp. 600-605.

터 확보와 창작자 보상의 균형점으로 제시된다.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독일의 사적 복제 보상금에 기원을 둔다.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1955년 5월 18일 Grundig(Tonband) 판결 등에서 가정 내 녹음이 복제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1964년 Personalausweise 판결에서는 기기 구매자에게 신분 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⁸⁶⁾ 개별 허락·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1965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녹음·녹화 기기 제조자가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복제 기기 보급으로 개별 허락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법률로 이용을 허용하되 사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DSM 지침 제4조의 opt-out 때문에 AI 개발자가 적법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개별 거부권을 제한하는 대신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법정 보상금을 징수·배분하는 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⁸⁷⁾

3.2 교육 분야 AI 라이선싱 활성화 방안

앞서 본 법정 보상금 제도 및 ECL과 함께, 교육 목적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발적 라이선싱 체계를 활성화할 법적·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 자발적 라이선싱(Voluntray licensing)은 권리와 이용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따라 이용이 강제되는 강제허락이나 보상금 제도와 구별되며, 강제 라이선스나 보상금보다 시장 친화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한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C⁸⁸⁾)가 2025년 6월 공개한 CC Signals는 전통적 의미의 자발적 라이선스라기보다는, 창작자나 콘텐츠 관리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형 AI 학습 등과 관련한 이용 선호와 기대를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한 ‘선호 표시(preference signals)’ 프레임워크로, 권리가 AI 이용 조건이나 선호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권리관리 방식에 가깝다.⁸⁹⁾

86) BGH Urteil vom 1955. 05. 18. – I ZR 8/54, GRUR 1955, 492 – Grundig/Tonband.; BGH Urteil vom 1964. 05. 29. – I ZR 4/63, GRUR 1965, 104 – Personalausweise.

87) 신창환, “인공지능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 논의와 관련한 옵트 아웃제 및 조건부 보상시스템 검토”, 저스티스 제207집, 한국법학원, 2025, 131-133쪽.

88)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조건만 지키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표준화된 이용허락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및 그 라이선스 체계를 뜻한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저작물 생성형AI 학습 전용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용 목적과 학습 범위, 데이터 가공·보유 기간,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담은 표준 양식을 제공하면 시장 참여자 간의 소모적 협상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의 이력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저작물 활용 공시 제도를 도입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학습에 쓴 데이터셋의 출처와 요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라이선스 협상에 나설 최소한의 담보를 갖게 된다.

셋째, 초기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에듀테크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면책 특혜를 주기보다는,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교육용 생성형AI 실증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2026년 기준 일반부문 기업당 최대 4,500만 원, 공개·활용 조건부 지원부문 기업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⁹⁰⁾ 현재 에듀테크 전용 부분은 없으므로, 이를 입법론적·정책적 제안으로 제시한다.

넷째, 저작권자가 생성형 AI 학습 허용 여부를 기술적·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계 판독 가능 이용조건 표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웹상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립해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생성형 AI 학습 불가(opt-out)”나 “교육 목적 시 제한적 허용” 같은 조건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게 하면,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3 국제 협력과 상호주의 원칙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와 에듀테크 산업의 저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나든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저작물을 수집·학습하거나, 반대로

89) Creative Commons, “Introducing CC Signals: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Age of AI”, 2025. 6. 25, <<https://creativecommons.org/2025/06/25/introducing-cc-signals-a-new-social-contract-for-the-age-of-ai/>>, 검색일: 2026. 6. 24.

90) 경남지역산업진흥원,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2026. 3. 13, <https://gn.riia.or.kr/bo_ard/businessAnnouncement/view/1680a622-1e9b-11f1-ad2e-5d6f4c772530>, 검색일: 2026. 6. 24.

해외 빅테크의 LLM 기반 교육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국제사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미국·EU 등 주요국 간의 저작권 집행 협력과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예외의 상호주의 적용 범위에 관한 국제 협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WTO TRIPS 협정 제13조와 WIPO 저작권조약(WCT) 제10조가 규정한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의 틀 안에서, AI 학습 데이터 활용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⁹¹⁾

나아가 해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지원하면,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합법적으로 해외 교육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자국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일괄 정산하는 글로벌 라이선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을 국제 분쟁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한국형 교육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VI. 맺는 글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리 목적 교육 콘텐츠 제작이 일으키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변형적 이용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행 법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판단은 입력 단계(학습 데이터)와 출력 단계(콘텐츠 생성)를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입력 단계에서는 TDM 법리와 생성형 AI 학습 라이선스 시장의 형성 여부가, 출력 단계에서는 시장 대체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

둘째, 2023년 *Andy Warhol* 판결은 영리적 이용에서 이용 목적의 동질성이 인정되면 단지 새로운 표현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교육 시장에서 경쟁하는 영리 목적

91) TRIPS 협정 제13조 및 WIPO 저작권조약(WCT) 제10조의 3단계 테스트(① 특별한 경우 ②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의 공정이용 항변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향후 국내 법원이 관련 분쟁을 다룰 때 중요한 비교법적 준거가 될 것이다.

셋째,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은 생성형 AI 시대의 복잡한 이용 양상을 담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를 넘어서려면 ① 교육 분야에 특화된 구속력 있는 생성형 AI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제정, ② EU·일본 법제를 참고한 독립적 TDM 면책 규정(제35조의6)의 신설, ③ 확대집중관리(ECL)에 기초한 보상금 제도 또는 표준 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③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을 통한 ‘상호관리계약’으로 국경을 넘어 글로벌 저작권을 일괄 관리·정산하는 음악 분야의 집중관리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집중관리 모델을 차용하여 교육 저작물 중심의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해외 교육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교육 저작물을 학습시킬 때에도 국내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분배되는 선순환적 라이선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AI 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저작권자 보호 일변도의 논리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변형적 이용 법리의 정교한 적용과 맞춤형 입법 설계를 통해 양측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길을 모색했다는 데 있다.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발휘할 잠재력을 온전히 살리면서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균형 잡힌 법적 생태계를 위해, 입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2023.

최승재/김시열, 저작권법 제1판, 법문사, 2024.

2. 학술지

권순재,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8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4, 25-56쪽.

권태웅/서보국,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275-313쪽.

권혜성/김민지, “생성형 AI 챗봇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대규모 온라인 수업 설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5, 1763-1786쪽.

김경숙, ““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91-123쪽.

_____,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IT와 법연구 제27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3, 33-72쪽.

_____,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계간 저작권 제38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5-54쪽.

김민주/김현경, “AI 학습에서 “변형적 이용”과 “잠재적 시장”의 의미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제3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5, 297-339쪽.

김세영, “TF-IDF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AI 기반 개별화 학습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7권 제4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23, 453-464쪽.

김종진/장향배,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개선 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 39-61쪽.

류시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법조 제73권 제5호, 법조협회, 2024, 393-434쪽.

- _____, “뉴스와 공정이용”,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 한국사법학회, 2026, 177-218쪽.
- 문건영,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71-113쪽.
- 민준홍/김미량,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 현장의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8권 제8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5, 25-40쪽.
- 송재섭,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44쪽.
- 신창환, “인공지능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 논의와 관련한 옵트 아웃제 및 조건부 보상시스템 검토”, 저스티스 제207집, 한국법학원, 2025, 109-142쪽.
- 이호신,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387-413쪽.
- 정세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79-216쪽.
-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71-113쪽.
- 차상욱,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2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1-55쪽.
- 채주혜/김민영/류강/유영만/신윤희,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 챗봇 기반 플랫폼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4, 1053-1068쪽.
- 최숙영, “생성형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7권 제9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4, 23-33쪽.
- Daniel J. Gervais, “The Landscape of Collective Management Schemes”,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 34, Columbia Law School, 2011, pp. 591-617.
- Matthew Sag, “Copyright Safety for Generative AI”, *Houston Law Review* Vol. 61,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2023, pp. 295-347.

- Michael W. Carroll, “The Struggle for Music Copyright”, *Florida Law Review Vol. 57*, Fredric G. Levin College of Law, 2025, pp. 907-961.
-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ard Law Review Vol. 103*, The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0, pp. 1105-1136.
- Thomas Riis/Jens Schovsbo, “Extended Collective Licenses and the Nordic Experience -It’s a Hybrid but is it a Volvo or a Lemon?”, *Columbia Journal of Law and the Arts Vol. 33 Iss. 4*, Columbia Law School, 2010, pp. 471-498.
- Tim W. Dornis/Jane C. Ginsburg/Nicola Lucchi, “GEMA v. OpenAI (Munich I Regional Court, 2025): Doctrinal,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pyright and Generative AI”, *JuristenZeitung Jahrgang. 81 Heft. 6*, Mohr Siebeck Verlag, 2026, pp. 235-246.

3. 신문기사

-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日자민, AI 법 벌칙 검토…답페이크 ·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2026. 4. 2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3010007416>>, 검색일: 2026. 5. 20.
- 한국경제, 박미옥, “웅진씽크빅 창립 45년… ‘에듀테크 시대’ 고객과 함께 연다”, 2025. 8. 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377081>>, 검색일: 2026. 5. 10.

4. 웹자료

- 경남지역산업진흥원,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2026. 3. 13, <<https://gn.riia.or.kr/board/businessAnnouncement/view/1680a622-1e9b-11f1-ad2e-5d6f4c772530>>, 검색일: 2026. 6. 24.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https://likms.assembly.go.kr/bill/bi/main/mainPage.do>>, 검색일: 2026. 6. 24.
- 법무법인(유) 세종,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2026. 2. 1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검색일: 2026. 5. 20.
- 텍스트넷 블로그, “LLM 시대를 맞이하는 에듀테크(교육)시장의 AI 도입 전략”, 2024. 6. 3, <<https://article.textnet.kr/ai-adoption-strategy-in-edutech>>, 검색일: 2026. 5. 10.

- Authors Guild, “Mixed Decision in Anthropic AI Case”, 2025. 6. 25, <<https://authorsguild.org/news/mixed-decision-in-anthropic-ai-case/>>, 검색일: 2026. 5. 10.
- Copyright Alliance, “Analysis in Bartz v. Anthropic AI Case Marred by Fatal Flaws”, 2025. 7. 24, <<https://copyrightalliance.org/bartz-anthropic-ai-case-flaws/>>, 검색일: 2026. 5. 10.
- Creative Commons, “Introducing CC Signals: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Age of AI”, 2025. 6. 25, <<https://creativecommons.org/2025/06/25/introducing-cc-signals-a-new-social-contract-for-the-age-of-ai/>>, 검색일: 2026. 6. 24.
- EUIPO,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Munich considered memorization and temporary copies occurred in model training as infringing reproductions of works”, 2025. 11. 11, <<https://www.euipo.europa.eu/en/law/recent-case-law/the-higher-regional-court-of-munich-considered-memorization-and-temporary-copies-occurred-in-model-training-as-infringing-reproductions-of-works>>, 검색일: 2026. 5. 20.
- Euro news, Krystal Hu,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2023. 2. 2, <<https://www.euronews.com/next/2023/02/02/openai-chatgpt>>, 검색일: 2026. 5. 10.
- Hannes Snellman, “Text and Data Mining for AI Training”, 2026. 1. 27, <<https://www.hannessnellman.com/news-and-views/blog/text-and-data-mining-for-ai-training/>>, 검색일: 2026. 5. 20.
- Harris Beach Murtha, “Bartz v. Anthropic: Early Look at Copyright Claims and Generative AI”, 2025. 7. 1, <<https://www.harrisbeachmurtha.com/insights/bartz-v-anthropic-early-look-at-copyright-claims-and-generative-ai/>>, 검색일: 2026. 5. 20.
- Norton Rose Fulbright, “Bartz v. Anthropic: Settlement reached after landmark summary judgment and class certification”, 2025. 9. 5, <<https://www.insidetechlaw.com/blog/2025/09/bartz-v-anthropic-settlement-reached-after-landmark-summary-judgment-and-class-certification>>, 검색일: 2026. 5. 20.
- _____, “[Inside Tech Law] Germany delivers landmark copyright ruling against OpenAI: What it means for AI and IP”, 2025. 11. 17, <<https://www.insidetechlaw.com/blog/2025/11/germany-delivers-landmark-copyright-ruling-against-openai-what-it-means-for-ai-and-ip>>, 검색일: 2026. 5. 20.

- OpenAI, “Partnership with Axel Springer to deepen beneficial use of AI in journalism”, 2023.
12. 13, <<https://openai.com/index/axel-springer-partnership/>>, 검색일: 2026. 5. 20.
- Public Knowledge, “Courts Agree: AI Training Ruled As Fair Use in Bartz v. Anthropic and Kadrey v. Meta”, 2025. 7. 3, <<https://publicknowledge.org/courts-agree-ai-training-ruled-as-fair-use-in-bartz-v-anthropic-and-kadrey-v-meta/>>, 검색일: 2026. 5. 20.
- Reed Smith, Nick Breen/Henry Birkbeck/Harry Clark/Oliver Hogg, “UK copyright and AI report: the ‘opt-out’ is dead, but what comes next?”, 2026. 3. 26, <<https://www.reedsmith.com/articles/uk-copyright-and-ai-report-the-opt-out-is-dead-but-what-comes-next/>>, 검색일: 2026. 5. 20.
- WilmerHale, “European Commission Releases Mandatory Template for Public Disclosure of AI Training Data”, 2025. 8. 13, <<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blogs/wilmerhale-privacy-and-cybersecurity-law/european-commission-releases-mandatory-template-for-public-disclosure-of-ai-training-data>>, 검색일: 2026. 5. 20.

5. 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에듀테크 진흥방안,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202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
- 백지연,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제24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 홍선주/권점례/김광규/박용효/이재봉/박연정,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
- 文化庁(일본 문화청), 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 – Overview, 2024.

6. 판례

-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 (N.D. Cal. 2025).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Ltd.*, No. 1:23-cv-00135 (D. Del. 2023).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3:23-cv-03417-VC (N.D. Cal. 2025).
-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 The New York Times Co. v. Microsoft Corp.*, No. 1:23-cv-11195 (S.D.N.Y. filed Dec. 27, 2023).
-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9th Cir. 2007).
- Stewart v. Abend*, 495 U.S. 207 (1990).
- BGH, Urteil vom 18. 5. 1955 – I ZR 8/54, GRUR 1955, 492 – *Grundig/Tonband*.
- BGH, Urteil vom 29. 5. 1964 – I ZR 4/63, GRUR 1965, 104 – *Personalausweise*.
- LG Hamburg, Urteil vom 27. 9. 2024 – 310 O 227/23 (*Robert Kneschke v. LAION e.V.*).
- LG München I, Urteil vom 11. 11. 2025 – 42 O 14139/24 (*GEMA v. OpenAI*).

[Abstract]

A Copyright Law Study on the Production of For-Profit Educational Content Using Generative AI

–Reinterpreting Fair Use Through the Lens of Transformative Use and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Park, Sun Ae^{*}

Chung, Yeun-Dek^{**}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e methods of producing content in the education industry are undergoing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as commercial educational content providers, such as edtech companies, leverage generative AI to mass-produce lecture materials, question banks, and supplementary learning resources, conflicts with existing copyright laws have become unavoidable reality. However, the current fair use provision under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fails to adequately encompass the dual structure unique to generative AI, which involves both the “collection of training data” and the “generation of new conten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under U.S. copyright law for determining the fair use of generative AI-based educational content and examines its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2023 U.S. Supreme Court ruling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dy Warhol* ruling”), which re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ercial use and transformative use, this paper examines fair use by dividing generative AI educational content into the input stage (training data) and the output stage (content generation). Furthermo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European Union’s (EU)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s,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 First author: Doctoral program completer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 Staff, Content Planning Team, Daekyo Co., Ltd.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use for information analysis), and the Fair Use Guideline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in February 2026,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Korean copyright law.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the fair use of generative AI educational content must be evaluated under different criteria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input stage and the output stage. Second, considering the rationale of the *Andy Warhol* ruling, the scope for claiming transformative use is significantly narrowed for commercial generative AI educational content whose purpose of us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of the original work. Third, the general provision of Article 35-5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alone cannot fully accommodate the diversified patterns of use in the era of generative AI. To fill this legal vacuum, this study proposes: ① the establishment of binding fair use guidelines specialized for educational content, ②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TDM exception clause (Article 35-6) modeled after the EU and Japanese legislation, and ③ the implementation of a compensation system or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Key Words] Generative AI, Educational Content, Copyright, Fair Use, Transformative Use, Text and Data Mining (TDM), *Andy Warhol* Ruling,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